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26
----------	-------

발의연월일 : 2026. 3. 19.

발 의 자 : 진성준 · 안호영 · 임오경
허영 · 황정아 · 박용갑
허성무 · 강준현 · 박상혁
김한규 · 박홍배 · 민병덕
김태년 · 김주영 의원
(총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등 재산등록의무자가 본인과 배우자,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등 각 소유자별 합계액 1천만원 이상의 현금, 예금, 증권 등의 재산을 등록하여야 함.

그런데 현재 사모펀드는 예금에 포함하여 등록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내역에 사모펀드의 내역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예금의 총액에 포함되어 표시됨. 특히 사모펀드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고 운용내역과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공모펀드와 달리, 소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되며 운용 내역의 공시 의무도 제한적인 투자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예금과 분리하여 등록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예금에 포함된 사모펀드를 별도로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투명하게 공직자 재산공개제도를 운영하려 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등).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라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타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8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사모펀드”라 한다)

8. 사모펀드는 평가액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 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3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산을 등록하거나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생략)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목의 동산·증권·채권·채무 및 지식재산권(知識財産權)	3.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u><신설></u>	<u>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2호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이하 “사모펀드”라 한다)</u>
<u>라. ~ 카. (생략)</u>	<u>마. ~ 타. (현행 라목부터 카목까지와 같음)</u>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재산의 종류별 가액(價額)의 산정방법 또는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③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설></u>	<u>8. 사모펀드는 평가액</u>

<u>8.</u> ~ <u>15.</u> (생략)	<u>9.</u> ~ <u>16.</u> (현행 제8호부터 제15호까지와 같음)
④ ~ ⑦ (생략)	④ ~ ⑦ (현행과 같음)